

2010. 9. 16.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충주시 읍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자	의결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 8.25.	2010. 8.25.	2010. 9.15.	2010. 9.15.	윤범로 의원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 8.25.	2010. 8.25.	2010. 9.15.	2010. 9.15.	교통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②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현천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을 재래

시장 및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개방하고, 칠금공영 주차장을 유료화(2급지 적용) 하여 관리하며,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장비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②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3조 제4항 제9호)
- 나.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및 칠금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안 별표 1 비교의 제4호 나목)

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기기준 정비
(안 별표2 제6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임

가. 조례안 구성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규칙까지 9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응급 의료 지원에서 그 지원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설치 및 권장에서는 시장이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장비의 관리, 안 제8조는 시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영의 필요성 검토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장마비에 의해 쓰러진 응급환자의 심장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에 강한 충격을 주어 심박동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찾게 하는 의료장비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지난해 15만 5,000여명으로 3년새 54%가 증가하였다고 함. 이는 최근 2~3년 동안 한해 20만명의 심장질환자가 새로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심장질환의 경우 얼마나 빨리 응급조치를 하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심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관건이 됨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이 이 의료장비의 혜택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 의미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짐

다. 검토의견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짐.

다만, 조례 통과 후 심장충격기가 설치될 경우 400~500만원 대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가 관리 허술과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무용지물(2010.8.23일 KBS뉴스 보도) 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②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현천, 층의, 금릉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고 터미널 부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칠금공영주차장을 유료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음. 그러나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임

비록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긍·부정적 사항

1) 긍정적 사항

교현천 공영주차장 및 충의 공영주차장은 인근에 충의, 무학, 공설, 자유시장 등 상설 재래시장과 5일마다 열리는 풍물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릉주차장은 주차장 주변 인근상가와 연수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매우 혼잡한 지역임

그러나, 적지 않은 시민이 재래시장 및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시 발생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교통 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여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주차 편의의 제공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인근상가를 찾는 시민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어려운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2) 부정적 사항

첫째, 시 세입의 감소 및 주차관리원 재배치 문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무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의 세입은(2009년 기준) 교현천공영주차장 6백만원, 충의공영주차장 7백만원, 금릉공영주차장 66백만원임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하여도 현재 주차장에 근무하는 6명의 무기계약직 고용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바, 연간 8천만원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

또한, 무료개방 시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6명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둘째, 형평성 문제

충의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향후 운영 예정으로 있는 칠금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와 충주시 최대 상가 밀집 지역인 ‘차 없는 거리’, 현대타운 및 성서동 주변 상가와 공설시장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천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은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셋째, 주변 거주민들의 장기 주차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이 주변 거주민들의 전용 주차장 또는 타 목적의 장기 주차 등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어 무료개방을 시행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당초 무료개방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검토의견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은 교현천공영주차장을 비롯한 3개소의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에 따른 사항임.

주차장 무료개방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세입감소 등의 부정적 측면과 공영주차장 인근 민영(사설) 주차장에 일정 부분 피해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질의 : 우리 시에 심장충격기 구비는?

답변 : 12개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종합운동장, 터미널, 구치소에 구비

(2) 질의 : 심장충격기 구입 권고 거부시 조치 사항은?

답변 :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사항임.

(3) 질의 : 기계 구입 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 : 기계에서 안내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임. 교육도 실시하였음.

(4) 질의 : 조례안 제4조의 설치대상 규정을 좀 완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 상위법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을 규정한 것임. 낮추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원 배치는?

답변 : 무료개방 하더라도 주차장 관리인원은 필요함.

(2) 질의 : 주차장에 소화전을 설치할 용의는?

답변 : 검토하겠음.

6. 심사결과

[1]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